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정당한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	무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정당한 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이의신청 내용	권리 도용 사실				
	증명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란의 "출원번호"란에는 "품종보호 출원 2013-○○○호"와 같이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출원일"란에는 출원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란의 "무권리자"란에는 무권리자가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게 적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을 1개만 적어야 합니다.
3. "권리도용 사실"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품종이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을 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명방법"란에는 권리 도용 사실란에 적힌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신고서"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